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25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고민정·장철민·강경숙
진선미·김문수·문정복
정을호·박선원·김준혁
이성윤·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573으로 OECD 평균인 $20,499의 66.2%에 불과한 수준임.

거점국립대 육성, AI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등 주요 고등교육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함.

이에 세제개편안(2025.7.31.)에 따른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통해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

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60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2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2030년----------.